

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

행정복지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20.(목)



행정복지위원회
전문위원 고종선

목 차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
2.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
3.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17호
- 제출일: 2025년 2월 3일
- 제출자: 박주용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2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자원봉사의 일환인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」
-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발전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- 재능기부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과 기술개발에만 활용하지 않고,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뜻합니다. 또한 이는 일반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해당합니다.
- 2025년 2월 기준, 대구 관내 ‘재능기부’ 관련 제명의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남구, 달서구, 북구 등입니다.
- 조문 내용상 재능기부의 정의를 법률, 의료, 문화예술체육, 전문기술, 사회복지 및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. 작년 군민들의 분야별 봉사활동 현황은 15이상의 분야에 61,860건으로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
(단위: 명)

계	생활편의	주거환경	상담	교육	보건의료	농어촌	문화행사	환경보호
61,860	10,763	163	1,730	3,539	128	465	8,497	2,847
	행정보조	안전방법	인권공익	재해재난응급	국제협력	멘토링	기타	
	2,643	11,432	0	14	190	395	19,054	

- 본 조례안은 세분화 된 분야별 봉사활동을 유목화하는 점, 다양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장려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식함양을 제고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18호
- 제 출 일: 2025년 2월 3일
- 제 출 자: 이연숙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2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최근 아동 유괴 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,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근거하여 아동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아동보호에 대한 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~제5조)
-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유지·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7~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, 같은 법 시행령
-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 유괴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,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아동보호구역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아동보호구역과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.
-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맡기고 있으며, 국회에서는 2023년 배현진의원 대표발의로 「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강행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계류된 바 있습니다. 2023년 당시 10개 지역(대구 포함)에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대구 관내 서구, 남구, 달서구 등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아동의 위험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.
 - ① 아동보호구역 지정 범위 및 기준
 - ②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여부
 -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설물 설치 기준
- 행정안전부에서는 “생활안전지도”를 통해 다양한 위험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‘어린이대상범죄주의구간’도 안내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기를 바라며,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19호
- 제출일: 2025년 2월 3일
- 제출자: 최재규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2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,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하였으며, 청소년 관련 기본 조례로 역할하도록 함으로서 달성군 청소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총칙(정의·책무·다른 조례와의 관계)에 관한 사항(안 제1장)
-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2장)
- 청소년육성위원회·참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장~제4장)
- 청소년지도위원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장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
-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달성군의 청소년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.
- 현재 달성군 조례중 청소년과 관련된 제명을 가진 조례는 총 10개로 확인됩니다.

순번	제명(대구광역시 달성군)	순번	제명(대구광역시 달성군)
1	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6	의회 어린이·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
2	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7	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
3	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8	소아·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 지원 조례
4	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	9	아동·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
5	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	10	아동·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

- 이중 「청소년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는 본 조례로 판단됩니다. 다만, 2015년 이후 실질적 개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기간 상위법은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
- 기존 조례와 상위법령이 상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① 법상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심의기능을 수행하나, 조례상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점
 - ② 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상 명시되지 않는 점
 - ③ 법상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보다 조례상 결격사유가 축소되어 있는점
- 따라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상황을 반영하고, 확대되는 청소년 정책의 통일성을 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